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7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백선희 · 정춘생
김재원 · 신장식 · 서왕진
강경숙 · 김준형 · 용혜인
차규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형사소송법」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.

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112조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2조제2항 중 “검사는”을 “관할 수사기관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2조(고발) ① (생 략) ② <u>검사는</u>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.	제112조(고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관할 수사기관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